



# 【검토보고서】

2017. 6. 21(수)  
제 282 회 정례회

## 양주시 시세 징수조례안 검 토 보 고

### 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



 **양주시의회**  
Yangju City Council  
【전문위원 최상열】

#### 1. 제안경과

- 가. 제안자 : 양주시장(징수과장)
- 나. 제출일 : 2017년 5월 31일

#### 2. 제안이유

- 시민들이 지방세의 징수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분리·제정( 2016. 12. 27. 공포, 2017. 3. 28. 시행)함에 따라, 「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」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과 시행시기 및 체계에 맞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·보완하려는 사항임.

#### 3. 주요내용

-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
  - 1) 시세 징수 조례 목적을 규정(안 제1조)
  - 2)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대상을 규정(안 제3조)
    -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기간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

#### 4. 기타사항
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입법예고 : 20일
- 부서협의
  - 부패영향평가: ‘원안동의’
  - 성별영향분석 평가: ‘의견없음’
  - 규제심사: ‘해당 없음’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제정 사유

- 본 조례는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·이해할 수 있도록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관련 규정들을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분리·제정함에 따라
- 현행 「양주시 시세 기본조례」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「지방세징수법」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임.

※ 지방세징수법(법률 제14476호, 2016.12.27., 제정, 시행 2017.3.28.)

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「지방세기본법」의 징수·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

### 나. 주요 내용

#### (1) 목적(안 제1조)

※ 제정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세징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(2) 법령과의 관계(안 제2조)

- 시세 징수에 관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.

※ 제정안

제2조(법령과의 관계) 양주시 시세(이하 “시세”라 한다)의 징수에 관하여 「지방세징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「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# (3)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(안 제3조)

-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“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는 위임한 성실납부자의 기준”을 정함.

※ 제정안

현행(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)	제정안(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)
제34조(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)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서 성실납부자란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년 이상(면허분등록면허세, 균등분주민세, 소유에 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)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.	제3조(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)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”란 <u>체납발생일 직전 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(취득세,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, 재산세,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)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</u> 를 말한다.

※ 지방세징수법

제105조(체납처분 유예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
2.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

(4) 부칙사항(시행일, 경과규정,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)

※ 제정안

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일반적인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「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」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「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」 규정에 따른다. 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」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한다.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「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	제105조(채납처분 유예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납액에 대하여 채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. 1.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 2.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채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	안제3조
지방세 징수법 시행령	제29조(납부 및 수납의 방법) ②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서 수납하여야 하며,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다. 1.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및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 없는 도서·오지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수납하는 경우 2.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수납하는 경우	미규정

다. 기타 참고사항

※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

법령	위 임 사 항	비고
지방세 징수법	제7조(관허사업의 제한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,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. ③ 지방자치단체는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	미규정
	제11조(고액·상습채납자의 명단공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채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채납자에 대해서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(이하 “지방세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채납액 등(이하 “채납정보”라 한다)을 공개할 수 있다.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채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	미규정

라. 종합검토 의견

- 본 제정안은 상위법 분법에 따라 「양주시 시세 기본조례」에서 양주시 시세 징수규정을 별도로 분리·제정하면서,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.